

특수건물 화재보험요율 적용방법

윤 동 혁
〈본 협회 보험 2부 차장〉

예 12. 공장(연면적의 합계가 1,000㎡ 이상인 공장건물과 공업단지 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중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에 소속된 모든 공장 및 그 부속건물)

소재지 : 인천시 남구 용현동 10
 건물구조 : 세멘벽돌조 목조트라스조
 용도(업종) : 보온병 제조
 보험가입금액 : 200,000,000원

적용 요건 { 물 건 : 공장물건
 위험등급 : 18등급
 건물급수 : 3급
 기본요율 : 0.624%

계산

- 화재보험료 : $200,000,000원 \times 0.624\% \times 75\%$ (특수건물할인 25%)
 $= 936,000원$ (1)
- 신체보험료 : 화재보험료의 2%
 $936,000원 \times 2\% = 18,720원$ (2)
- 총보험료 : (1) + (2)
 $936,000원 + 18,720원 = 954,720원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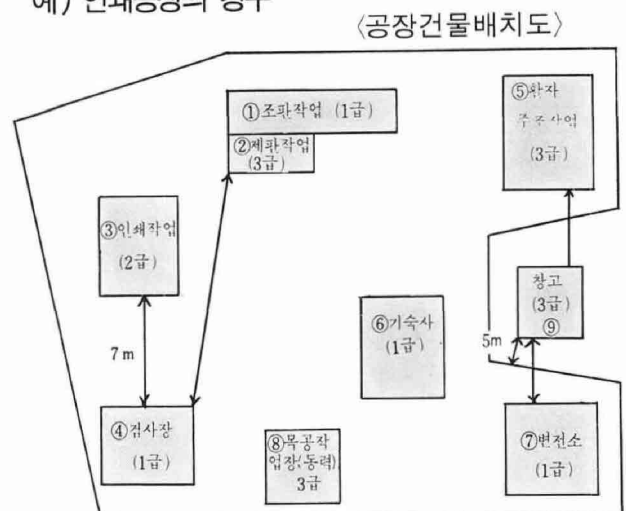
註1) 공장물건은 요율적용이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뒤에 다시 설명하고자 한다.

예 13. 공동주택(가구수가 10이상이며 연면적이 1,000㎡ 이상인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건물)
 -공동주택의 요율적용방법은 본지 제37호가. 주택물건 적용에 참조-

이상 설명한 13개업종은 특별법에서 정한 특수건물이며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각 업종별로 적용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공장물건 요율 적용방법

예) 인쇄공장의 경우



적용요율산출(요율서 p220 인쇄 및 지공업참조)

- ①의요율 : 0.222%(15등급)
-조판(채자, 식자, 교정, 지형 및 납판)-
- ②의요율 : 0.733%(25등급)
-제판(사진판, 동판)-
- ※ ①과 ②의 사이벽이 방화구획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건물을 0.733%로 적용한다.
- ③의요율 : 0.355%(23등급)
-그라비아인쇄(잉크조합, 용지건조, 인쇄 및 해판)-
- ④의요율 : 0.178%(부속작업장)
-검사장을 기준으로 하여 제일 가까운 대면공장은 인쇄공장이며 공지거리는 7m임
- ⑤의요율 : 0.546%(13등급)
-활자주조(모형주조 끝마침)-
- ⑥의요율 : 0.139%(일반부속시설)
-기숙사-
- ⑦의요율 : 0.085%(부속동력실)
-변전소-
- ⑧의요율 : 0.780%(그밖의 부속작업장. 사용동력20Kw 미만)
-부속 목공작업장-
- ⑨의요율 : 0.413%(부속작업장. 공지거리 15m이상~20m미만)
-창고-

註1) 공장물건의 요율적용요율은 위의 예를 참고로 하여 모든 물건에 적용한다.

註2) 공장물건요율적용시 유의사항

- ① 각 항목별 적용상 유의사항을 반드시 이해할 것.
- ② 작업공정에 따라 여러 업종의 요율이 적용될 수 있다.
- ③ 동일 건물이라도 방화구획에 의하여 위험이 분리된 경우에는 작업공정별 요율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.
- ④ 휴업중인 공장은 공장 기본요율의 1/2을 적용한다.
- ⑤ 위험품과 동산엔 각각 할증요율이 부가된다.

6. 복합구조건물

복합구조건물이란 2종이상의 다른 구조로 된 건물을 말하며 이중 최열등급에 해당하는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물 전체바닥(연면적)의 30%이하인 경우

에는 다음에 의하여 요율을 적용한다.

가. 우급·열급의 판정

복합구조 건물의 계수 적용을 위한 구조급수는 우급 및 열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.

우급은 최열급부터 순차적으로 각종 바닥면적을 합계하여 건물전체 바닥면적(연면적)의 70%에 도달하는 때의 급수로 정하며 열급은 당해 건물의 최열급의 급수로 정한다.

나. 요율적용

(1) 복합구조건물의 구조급수는 최열급(계수표의 열급)으로 하며 기본 및 할증요율이 건물 급수에 의하는 것의 당해요율은 최열급 요율에 계수표의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.

(2) 열급구조의 각종 바닥면적 합계가 건물전체 바닥면적(연면적)의 5% 이하인 경우에는 모옥과 그 부분은 각기 다른 요율을 적용한다. 다만 당해 부분에 위험품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때에는 (1)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

〈계수표〉

우 급	열 급	열급구조의 각종 바닥면적합계(%)	
		15% 이하	15% 초과~30%이하
1급	2급	0.70	0.75
	3급	0.75	0.80
	4급	0.80	0.85
2급	3급	0.80	0.85
	4급	0.85	0.90
3급	4급	0.90	0.95

註1) 이 규정은 공장건물에만 적용한다.

註2) 특약요율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.

다. 적용실례

예1)

〈보험가입금액 : 3억〉

1급 140㎡ (70%) 조판(인쇄업) 요율 : 0.222%	4급 60㎡ (30%) 조판(인쇄업) 요율 : 0.888%
---	--

적용 { 우급 : 1급 열급 : 4급
 요건 { 우급구조의 바닥면적 : 140m²(70%)
 열급구조의 바닥면적 : 60m²(30%)

○화재보험료 :
 $300,000,000원 \times 0.888\% \times 0.85$ (적용계수)
 =2,264,400원
 예2)

(보험가입금액 : 3억)

		3급 40m ² (20%) 요율 : 0.577%	
1급	4급		
130m ² (65%)	30m ² (15%)		
요율 : 0.222%	요율 : 0.888%		

적용 { 우급 : 3급 열급 : 4급
 요건 { 우급구조의 바닥면적 : 130m²+40m²(85%)
 열급구조의 바닥면적 : 30m²(15%)

○화재보험료 :
 $300,000,000원 \times 0.888\% \times 0.95$ (적용계수)
 =2,530,800원
 예3)

(보험가입금액 : 3억)

		2급 30m ² (15%) 요율 : 0.355%	
1급	3급 20m ²	4급 20m ²	
130m ² (65%)	(10%)	(10%)	
요율 : 0.222%	요율 : 0.579%	요율 : 0.888%	

적용 { 우급 : 2급 열급 : 4급
 요건 { 우급구조의 바닥면적 : 130m²+30m²(80%)
 열급구조의 바닥면적 : 20m²+20m²(20%)

○화재보험료 :
 $300,000,000원 \times 0.888\% \times 0.90$ (적용계수)
 =2,397,600원

7. 고액보험계약 할인요령

가. 내용

하나의 보험증권당 보험가입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할인한다.

<고액보험계약 할인율표>

보험가입금액	할인율
1. 보험가입금액 20억까지	
2. 위 금액초과 10억까지	최종보험료의 2%
3. 위 금액초과 20억까지	최종보험료의 4%
4. 위 금액초과 50억까지	최종보험료의 6%
5. 위 금액초과 200억까지	최종보험료의 8%
6. 위 금액초과 200억까지	최종보험료의 10%
7. 위 금액초과	최종보험료의 12%

<고액보험계약할인율 계산식>

보험가입금액	할인율 계산
① 20억까지	
② 30억까지	(보험가입금액×적용요율×0.98)+(0.4억×적용요율)
③ 50억까지	(보험가입금액×적용요율×0.96)+(1억×적용요율)
④ 100억까지	(보험가입금액×적용요율×0.94)+(2억×적용요율)
⑤ 300억까지	(보험가입금액×적용요율×0.92)+(4억×적용요율)
⑥ 500억까지	(보험가입금액×적용요율×0.90)+(10억×적용요율)
⑦ 500억초과	(보험가입금액×적용요율×0.88)+(20억×적용요율)

註1) 고액보험 할인율표와 고액보험계약 할인율 계산식은 같은 내용이므로 할인계산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.

나. 적용 예

예1) 증액 및 감액이 없는 경우

보험가입금액 : 3,000,000,000원
평균요율(적용요율) : 0.274%

계산

$$(3,000,000,000원 \times 0.274\% \times 0.98) + (0.4억 \times 0.274\%) = 8,165,200원$$

<참고>

○고액할인보험료 :

$$3,000,000,000원 \times 0.274\% = 8,220,000원 \dots\dots (1)$$

$$1,000,000,000원 \times 0.274\% \times 2\%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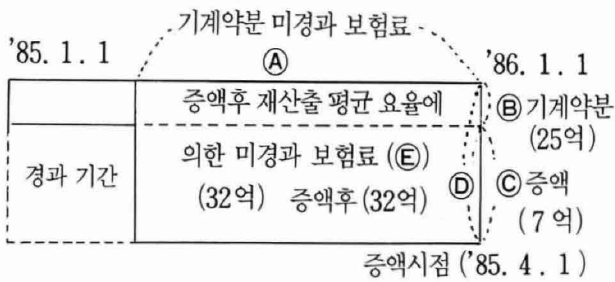
$$= 54,800원 (고액할인보험료) \dots\dots\dots (2)$$

○최종보험료 : (1) - (2)

$$8,220,000원 - 54,800원 = 8,165,200원 (납입보험료)$$

예2) 증액인 경우

<보기>	
기 계약분 보험가입금액 :	2,500,000,000원
기 계약 평균요율 :	0.1524%
기 계약보험료 :	3,794,760원
기 계약보험기간 :	85. 1. 1~86. 1. 1(1년간)
증액보험가입금액 :	700,000,000원
	(증액부분적용요율 : 0.132%)
증액기간 :	85. 4. 1~86. 1. 1(275일간)



- B+C=D의 평균요율 재산출
- B+C=D를 고액할인 공식에 의거 재산출한 평균요율에 의한 미경과 보험료(E)를 산출하여 기 계약분 미경과 보험료 (A)와의 차액을 계산한다.

계산

○증액후 재산출 평균요율 :
 $25억 \times 0.1524\% = 3,811,000원$
 $+ 7억 \times 0.132\% = 924,000원$
 계 32억 4,734,000원
 $4,734,000 \div 32억 = 0.1479375\%$ (평균요율)

○기 계약분 미경과기간 보험료 :
 $3,794,760 \times \frac{275}{365} = 2,859,065 \dots\dots\dots (1)$
 ※ 납입보험료 $\times \frac{\text{미경과일수}}{365}$
 =기 계약분 미경과기간 보험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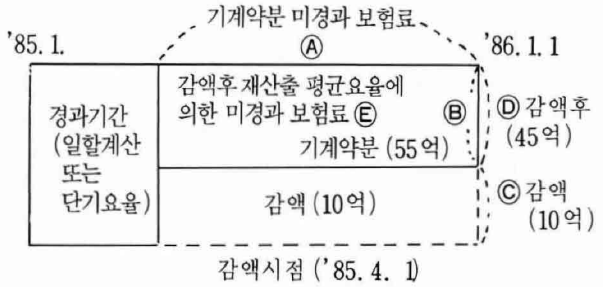
○증액보험가입금액 가산후 재산출 평균요율에 의한 미경과기간 보험료 :
 $[\{ (25억 + 7억) \times 0.1479375\% \times 0.96 \} + (1억 \times 0.1479375\%)] \times \frac{275}{365} = 3,535,503 \dots\dots (2)$
 ※ $[\{ (\text{원보험가입금액} + \text{증액보험가입금액}) \times \text{재산출평균요율} \times 0.96 \} + (1억 \times \text{재산출평균요율})] \times \frac{\text{미경과일수}}{365}$

○최종증액보험료 : (2) - (1)
 $3,533,503원 - 2,859,065원 = 676,438원$ (화재)

예3) 감액인 경우

<p>〈보기〉 기 계약보험가입금액 : 32억 기 계약평균요율 : 0.1524% 기 계약보험료 : 4,834,128원</p>

기 계약보험기간 : 85. 1. 1~86. 1. 1(1년)
 감액보험가입금액: 7억(감액부분적용요율 : 0.132- %)
 감액일자: 85. 4.1
 미경과기간: 85. 4. 1~86. 1. 1(275일)



- D부분의 평균요율재산출
- B-C=D를 고액할인 공식에 의거 재산출 평균요율에 의한 미경과보험료(E)를 산출하여 기 계약분 미경과보험료(A)와의 차액을 계산한다.

계산

○감액보험가입금액 차감후 재산출 평균요율 :
 $32억 \times 0.1524\% = 4,876,800원$
 $- 7억 \times 0.132\% = 924,000원$
 계 25억 3,952,800원
 $3,952,800 \div 25억 = 0.158112\%$

○기 계약분 미경과기간 보험료 :
 $4,834,128 \times \frac{275}{365} = 3,642,151 \dots\dots\dots (1)$
 (납입보험료)

○감액보험가입금액 차감후 재산출 평균요율에 의한 미경과 기간 보험료 :
 $[\{ (32억 - 7억) \times 0.158112\% \times 0.98 \} + (0.4억 \times 0.158112\%)] \times \frac{275}{365} = 2,966,224원 \dots\dots (2)$

○최종감액보험료 : (1) - (2)
 $3,642,151원 - 2,966,244원 = 675,927원$ (화재)

이제까지 현행 화재보험요율서를 중심으로 요율적용요령을 설명하였으나 그 적용방법이 복잡하므로 전체 의미보다는 요율적용의 기본원리를 이해하여 모든 보험대상물건에 응용되길 바라며 끝으로 그동안 애독하여 주신 보험계약자(피보험자)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☹